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7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50호(2022. 4. 7.)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및 제2024-341호(2024. 7. 11.)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00번지, 755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은평구	응암동 700 일대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55,942.0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응암동 755 일대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56,916.0	
변경	은평구	응암동 700 일대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57,929.7	
		응암동 755 일대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59,407.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위치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2022.04.04.(기준구역)	46,006	-
		2024.04.25.(추가구역)	9,936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2022.04.04.(기준구역)	47,124	
		2024.04.25.(추가구역)	9,792	
변경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2022.04.04.(기준구역)	46,006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변경으로 금회 추가 구역에 한하여 적용
		2024.04.25.(추가구역)	9,936	
		2025.06.19.(금회 추가구역)	1,987.7	
	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	2022.04.04.(기준구역)	47,124	
		2024.04.25.(추가구역)	9,792	
		2025.06.19.(금회 추가구역)	2,491	

3. 지정사유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등 피해 최소화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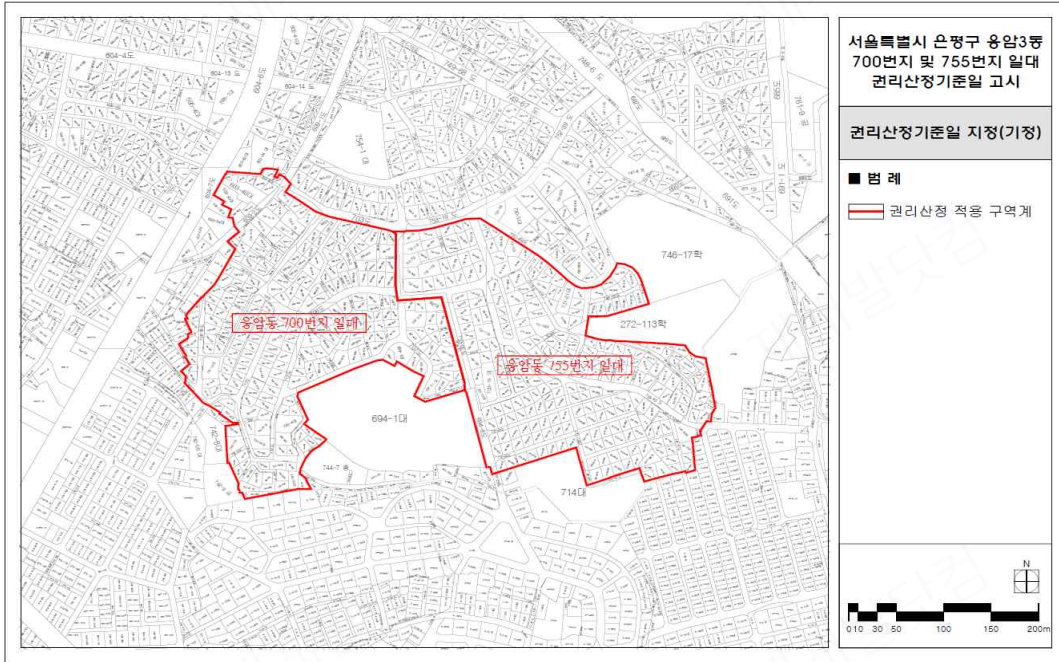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름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추가 편입 필지 포함)에 한해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불임참조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주거환경개선과 02-2133 -7252) 및 은평구 주택과(02-351-7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면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구역
 - 기 정



- 변경

